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11(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2. 1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2. 19.

라. 상정일자 : 2010. 3. 4.(제1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방범수당 삭제에 따라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특수지근무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 동 조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초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사항을 2008년 9월 10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 [별표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있어 당초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였던 영흥면 선재리, 중구 운남동, 남북동 용진군 영흥면 내리 등을 특수지에서 제외하고 영흥면 외리, 북도면 신도리, 자월면 이작리, 백령면 북포리 등을 특수지로 추가한 사항과 기타 등급을 조정한 사유는 2009년 9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이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역시 행정자치부 규칙에 따라 준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근학, 이상철, 김용재, 조남휘 위원

- 특수지역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용진군 조사시 연평면 연평리가 아닌 연평면, 대청면으로 하여야 하고 백령면 남포리는 제외가 되어 있음 그이유는?
- 북도면의 경우 신도리와 시도리는 같은 지역임에도 등급이 다르고, 영흥면 외리는 병지이고 내리는 제외가 되어 있음

<답 변>

○ 김진택 자치행정국장

- 대상지역은 행정기관이 있는 지역만 조사가 되었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특수지역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기준표에 의거 조사한 결과임.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특수지역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등급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영 별표9의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로, “제27조의2제1항에 의한”을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은 영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한다.

②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시·군 ·구별	지역 및 등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벽지 지역	용진군				영흥면 외리
도시 지역	중 구			무의동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용진군		덕적면 백아리	북도면 장봉리	북도면 시도리
				북도면 신도리	
				덕적면 서포리	
	용진군		덕적면 소야리	자월면 승봉리	덕적면 진리
자월면 자월리					
자월면 이작리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선원면 금월리	불은면 두운리	
		양사면 교산리			
		송해면 솔정리			
		교동면 대룡리			
		서도면 주문도리			
접적 지역	용진군	연평면 연평리			
		백령면 진촌리			
		백령면 가을리			
		백령면 연화리			
		백령면 북포리			
		대청면 대청리			
		대청면 소청리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제6조제2항 관련)

기 관	지 급 대 상 및 등 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1. 결핵환자나 1종전염병 환자의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병동내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성병진료소등 성병의 진료·검사·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직접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	해발 800미터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숙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등 임산부의 분만, 분만 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결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산모·영아등 환자를 직접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	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비고

1. 윗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 (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생략)</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각 호----- 1. 2.(현행과 같음)</p>
<p>제3조(방법수당) ① 영 별표9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p>	<p><삭제></p>
<p>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노·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p>	<p>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p>

현행	개정안
<p>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 표9의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한 행정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p>	<p>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 표 9제9호에 따라----- -----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 ----- -----</p> <p><신설> 제6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은 영 별 표 10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한다.</p> <p>②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은 별 표 7과 같이 한다.</p>